

제302회 임시회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
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이병도의원 대표발의)

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 병 도
(더불어민주당, 기획경제위원회)

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2선거구 이병도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‘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현행 조례 제1조에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원인을 1인 가구의 증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.

다양한 문물의 영향으로 다양한 형태의 세대가 생겨나고 있기에 1인 가구의 증가가 이상한 현상은 아니지만 이 현상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증가로 귀결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.

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고독사의 정의를 “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·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,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

그렇다고 위 정의를 근거로 모든 고독사가 1인 가구에서 일어난다고 해석을 한다면 1인 가구의 부정적 기조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.

사람은 물리적으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닌 사회적, 정서적인 다양한 이유로 단절될 수 있습니다.

본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 고독사도 예방하여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자 합니다.

이상으로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